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(4공구)]

- 점검일시 : 2018.05.28 (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최영준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C-LINE 집수정 구간 가시설 설치 작업 구간에는 근로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이 임시로 설치되어 있으나 강도가 약하여 흔들림이 있고, 설치가 미흡하여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조속히 견고한 안전난간으로 교체하기 바라며,
 - 주형보 설치 작업구간(근로자 출입통제구간)에도 추락방지시설을 (안전난간 등)을 설치하여 관리하기 바람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철근조립 작업장에는 근로자 통행시 발이 빠지지 않도록 작업자 동선에 맞게 발판을 설치하기 바람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C-LINE 시점 U-TYPE 시공구간 가설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나 상부 미고정된 상태로 흔들림이 있어 근로자 이동시 전도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조치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
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토목부)

- C-LINE 시점부 BOX 완료구간에는 지하수가 유입되어 배수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니 흙막이가시설 안정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기 바람.

- 또한, 목재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니 조치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(붕괴 등의 위험 방지)

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토목부)

- C-LINE 작업장에는 주형보 설치작업장에 토류판 설치가 누락된 구간은 인접 노면침하 및 호우시 붕괴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조속히 토류판을 설치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(붕괴 등의 위험 방지)

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토목부)

- 금하교차로 비개착구간 측벽강관추진 작업이 토사 및 지하수 유입으로 작업이 중단된 상황으로 보강 및 차수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계측관리 및 주변 도로 침하 발생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C-LINE 레미콘 차량이 작업을 마치고 도로로 진입을 하고 있으나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 U턴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변 교통흐름을 방해, 차량 관련사고 우려가 있으니 재발되지 않도록 신호수 및 관련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9(건설기계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B-LINE 복공하부에서 용접 및 용단작업구간 근로자는 용접용 앞치마, 장갑 등을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,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43(개인보호구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C-LINE 거푸집 작업구간 및 가시설 설치작업장 근로자 휴게소 주변 등 화재 우려가 있는 공간에는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이 가능하도록 항상 소화기를 배치하여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(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)

